

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·보고 시기 및 절차 명시 (안 제19조의8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시기와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역할 명시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고,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별 시기 명확화
-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시기 혼란 해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심의 사항 명시 (안 제19조의9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공항시설법 제31조의8제4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심의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역할인 예방활동에 관한 문제의 분석, 조사, 등의 과정에서 항공 관련 기관 간 정보 교환,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심의 명시
-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의 심의 사항인 조류충돌 감소 정책 범위 및 위험성 인식·예방에 관한 문제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 역할 및 심의 사항 명확화에 따른 위원회 활성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장애물 설치 협의 대상 중 레이저광선 삭제 (안 제2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레이저광선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도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, 장애물 설치에 관한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장애물 설치에 관한 협의 대상에서 레이저광선을 삭제 (안 제22조 제1항제5호 삭제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현재 레이저광선 운영 시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국토교통부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장애물 협의까지 필요한 이중 규제 문제 해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금지행위를 보호구역으로 명확화 (안 제4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레이저광선은 보호구역으로 운영 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, 금지행위에는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로만 명시되어 있어 공간적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명확화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금지행위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명시 (안 제47조제2항제4호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레이저광선 운영 및 금지행위 대상의 혼선 해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조류유인환경 세부기준 마련 (안 제4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공항시설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조류 유인환경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충돌 위험 저감·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(안 제47조제6항 및 별표 20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항 주변 항공기-조류 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 증진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